

심사보고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9
----------	-----

2023. 4. 20.(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이옥규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3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4월 13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4월 20일

-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옥규 의원)

가. 개정사유

- 개관일, 입장료, 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비 납부·감면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휴관일 개관(안 제3조제1항)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도 개관
-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 확대(안 제4조)
 - (면제)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임신부 및 그 동반자 1명
 - (할인) 충청권 4개 시·도민
문의면 지역 상가, 식당, 숙박시설 이용자
- 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 대상 추가(안 제7조)
 - 교육시설(강의실, 체험실, 생활관, 그 밖의 부대시설)
-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교육비 납부 및 감면 등 규정 신설(안 제15조, 안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금번 개정조례안은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 휴관일,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시설·설치·운영 및 사용허가 대상 추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안제3조에 휴관일도 개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안 제4조의 입장료 면제 대상에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임신부 및 그 동반자 1명을 추가하고,

셋째, 안 제4조의 입장료 할인 대상에 충청권 4개 시·도민, 문의면 지역상가, 식당, 숙박시설 이용자를 추가하고,

넷째, 안제7조에 교육시설의 설치 및 사용허가를 신설하고,
다섯째,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비 납부 및 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하
는 것임.

본 조례안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기공에 따라 청남대에
교육관 및 생활관이 신축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관일 개관에 대한 규정과 입장료 면제 및 할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
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사람으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을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1. 임신부 및 그와 동반하는 사람 1명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충청권 4개 시·도(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체입장료를 적용

3.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 숙박시설을 당일 이용하여 제공받은 할인권을 제시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

제7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에 의한”을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로 한다.

9. 교육시설(강의실, 체험실, 생활관,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도지사는 청남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교육프로그램의 취지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숙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교육비 납부·감면 등) ① 제1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비의 납부금액·방법·절차 및 감면기준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자가 교육비를 납부한 이후 교육프로그램 시작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청남대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한 경우

제17조(종전의 제15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제18조(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거 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사전에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 장 료(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및 야간개장 (17:30이후)	비 고
어 른	6,000	5,000	19세 ~ 64세
청소년	4,000	3,000	13세 ~ 18세
어린이	3,000	2,000	7세 ~ 12세
노 인	3,000	2,000	65세 이상
군 인 등	4,000	3,000	· 계급이 하사 이하인 군인 · 사회복지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별표 2]

주 차 요 금(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당일(1회당 요금)
16인승 이상 승합차		3,000
15인승 이하 승합차		2,000
승용차		2,000
1,000cc 미만 경차		1,000
화물차	1톤 초과	3,000
	1톤 이하	2,000

[별표 3]

청남대 시설 사용료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및 사용구분	장소	사용료	비 고
본관 내부촬영	1층 2층	500,000/5시간	· 드라마, 영화, 광고(CF) 촬영 ※ 내부촬영 후 외부촬영은 별도 사용료 없음
외부촬영	청남대 내	100,000/1시간	· 드라마, 영화, 광고(CF) 촬영
기획전시관	대통령기념관 (별관)	50,000/일	· 냉.난방비 별도
세미나실		30,000 1회/2시간	
회의실		20,000 1회/2시간	
이벤트실		50,000/2시간	
강 당		50,000/2시간	
웨딩 촬영	청남대 내	100,000/일	· 승용차 2대(5명 기준)
야외 결혼식장	청남대 내	500,000/일	
대통령기념관 세미나실	대통령기념관	500,000/일	· 냉.난방비, 세탁비 별도

※ 야간 사용료는 100% 할증

■ 냉.난방비 기준

· 세미나실(1회 1시간 기준) : 난방비 40,000원, 냉방비 30,000원

■ 가산금 적용 : 1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요금의 20% 가산

■ 시설 사용료는 위 기재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 사용료는 상호협약에 따른다.

[별표 4]

교육비 반환기준(제16조제4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교육비 전액
천재지변이나 청남대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은 경우		· 납부한 교육비 전액
신청자가 교육비를 납부한 이후 교육프로그램 시작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교육프로그램 시작예정일 7일 전까지	· 납부한 교육비 전액
	교육프로그램 시작예정일 5일 전까지	· 납부한 교육비의 70퍼센트 해당액
	교육프로그램 시작예정일 3일 전까지	· 납부한 교육비의 50퍼센트 해당액
	교육프로그램 시작예정일 전일	· 반환하지 않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개관 및 관람시간) ① 청남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p> <p>1.·2.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4조(입장료) ① (생략)</p> <p>② (생략)</p> <p>1. ~ 7. (생략)</p> <p>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며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p> <p>9.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자</p> <p>10. (생략)</p> <p><신 설></p>	<p>제3조(개관 및 관람시간) ① 청남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u>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u></p> <p>1.·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입장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됨 사람.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p> <p>9.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u>사람</u></p> <p>10. (현행과 같음)</p> <p><u>11. 임신부 및 그와 동반하는 사람 1명</u></p>

현행	개정안
<p><u>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u></p> <p>③ (생략)</p> <p><u>1.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단체입장료에 준함</u></p> <p>2. (생략)</p> <p><신설></p> <p><u>3. (생략)</u></p> <p>④·⑤ (생략)</p> <p>제7조(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 ① (생략)</p> <p>1. ~ 8. (생략)</p> <p><신설></p> <p><u>9. (생략)</u></p>	<p><u>12. 그 밖에 도지사가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③ (현행과 같음)</p> <p><u>1. 충청권 4개 시·도(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체입장료를 적용</u></p> <p>2. (현행과 같음)</p> <p><u>3.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 숙박시설을 당일 이용하여 제공받은 할인권을 제시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u></p> <p><u>4. (현행 제3호와 같음)</u></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u>9. 교육시설(강의실, 체험실, 생활관,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u></p> <p><u>10. (현행 제9호와 같음)</u></p>

현 행	개 정 안
<p>②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u>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에 의한</u>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14조(주차료 징수) ① 소장은 청남대 주차장 사용자에게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u>별표2</u>와 같다.</p> <p>② (생략)</p> <p><신설></p>	<p>②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u>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u>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주차료 징수) ① 소장은 청남대 주차장 사용자에게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u>별표 2</u>와 같다.</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5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u></p> <p>① <u>도지사는 청남대를 사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u></p> <p>② <u>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③ <u>도지사는 교육프로그램의 취지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숙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u></p> <p>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6조(교육비 납부·감면 등)</p> <p>① 제1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비의 납부금액·방법·절차 및 감면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자가 교육비를 납부한 이후 교육프로그램 시작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청남대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한 경우

현행	개정안
<p><u>제15조</u>(사무의 위탁) 청남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신설></p> <p><u>7.</u> (생략)</p> <p><u>제16조</u>(상표 등의 사용) ① 청남대관리사업소가 등록한 상표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u>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거 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②·③ (생략)</p> <p><u>제17조</u>(시행규칙) (생략)</p>	<p><u>제17조</u>(사무의 위탁)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u></p> <p><u>8.</u> (현행 제7호와 같음)</p> <p><u>제18조</u>(상표 등의 사용) ① 청남대관리사업소가 등록한 상표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u>사전에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19조</u>(시행규칙) (현행 제17조와 같음)</p>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개관일, 입장료, 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 관련 조문 정비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비 납부·감면 등 근거규정 마련으로, 청남대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2. 비용 발생 요인

-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임신부 및 그와 동반하는 사람 1명
- 입장료 할인대상 확대
 - 충청권 4개 시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체입장료를 적용
 -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 숙박시설을 당일 이용하여 제공받은 할인권을 제시하는 경우: 별표1의 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
-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교육비 납부·감면 등
- 청남대 시설 사용료 부과 확대(야외 결혼식장 500천원)

3. 관련조문

- 안 제4조(입장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
 - 9.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11. 임신부 및 그와 동반하는 사람 1명
- 안 제4조(입장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다만, 중복하여 할인하지 아니한다.
 - 1. 충청권 4개 시도(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체입장료를 적용
 - 3.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 숙박시설을 당일 이용하여 제공받은 할인권을 제시하는 경우: 별표 1의 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

- 안 제15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도지사는 청남대를 사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교육프로그램의 취지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숙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안 제16조(교육비 납부·감면 등) ① 제1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감면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비용은 지속발생, 추계는 2023~2027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

나. 추계 결과

○ 산출과정

- 입장료 면제 및 할인

- ①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월평균 100명 가정×12개월×6,000원 = △7,200천원

- ② 임신부 및 동반 하는 사람 1명(면제)

: 월평균 100명 가정(동반포함)×12개월×6,000원 = △7,200천원

- ③ 충청권 4개 시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체입장료를 적용(1천원 할인)

: 40만명(연 100만명 방문객 중 평균 40% 충청권 4개 시도민) ×1천원=△400,000천원

- ④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 숙박시설을 당일 이용하여 제공받은 할인권을 제시하는 경우 : 별표1의 입장요금에서 2천원을 할인

: 30만명(연 100만명 방문객 중 30% 문의면 이용 가정)×2천원=△600,000천원

'23년 (①+②+③+④)*8개월/12개월=△676,267천원

'24년 ①+②+③+④=△1,014,400천원

'25년 ①+②+③+④=△1,014,400천원

'26년 ①+②+③+④=△1,014,400천원

'27년 ①+②+③+④=△1,014,400천원

-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교육용품 제작 및 구입, 강사 수당, 행사실비 등)

'23년 30회(주말)*20명(본관) = 65,000천원

'24년 48회(주말)*110명(본관 20, 대통령기념관 40, 경호실장동 14, 나라사랑교육문화원 36)= 600,000천원

'25년 48회(주말)*146명(본관 20, 대통령기념관 40, 경호실장동 14, 나라사랑교육문화원 72) = 750,000천원

'26년 48회(주말)*146명(본관 20, 대통령기념관 40, 경호실장동 14, 나라사랑교육문화원 72) = 750,000천원

'27년 48회(주말)*146명(본관 20, 대통령기념관 40, 경호실장동 14, 나라사랑교육문화원 72) = 750,000천원

- 교육비 납부·감면 등 ※ 100천원/1박 2일

'23년 30회(주말)*20명*100천원=60,000천원

'24년 48회(주말)*110명*100천원=528,000천원

'25년 48회(주말)*146명*100천원=700,800천원

'26년 48회(주말)*146명*100천원=700,800천원

'27년 48회(주말)*146명*100천원=700,800천원

- 청남대 시설 사용료 부과 확대(야외 결혼식장 500천원)

'23년 12회*500천원=6,000천원

'24년 30회*500천원=15,000천원

'25년 50회*500천원=25,000천원

'26년 50회*500천원=25,000천원

'27년 50회*500천원=25,000천원

○ 산출결과 : 연평균 583,000천원,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915,0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청남대 관리사업소장 김 종 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610,267	△471,400	△288,600	△288,600	△288,600	△1,947,467
입장료	△676,267	△1,014,400	△1,014,400	△1,014,400	△1,014,400	△4,733,867
교육비	60,000	528,000	700,800	700,800	700,800	2,690,400
시설사용료	6,000	15,000	25,000	25,000	25,000	96,000
세 출	65,000	600,000	750,000	750,000	750,000	2,915,000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65,000	600,000	750,000	750,000	750,000	2,915,000
재원 조달	65,000	600,000	750,000	750,000	750,000	2,915,000
자체 소 계	65,000	600,000	750,000	750,000	750,000	2,915,000
수입 지방세	65,000	600,000	750,000	750,000	750,000	2,915,000